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1가단505665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신성호, 배은서

피 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9.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1,024,661원 및 그 중 100,525,624원에 대하여 2021. 2. 26.부터 2021. 6.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2020. 12.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0. 12. 14. 접수 제158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나.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판사 이회기

별지